제179회 거창군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2011. 12. 15. (목) 10:00

조례 및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임채근]

【목 차】 ___

1.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 면
2.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면
3.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 22 면
4.	거창군	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33 면

─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검 토 보 고 서 ─ ─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11. 16.
- 발 의 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11. 17.

2. 제안이유

○ 우리 군의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숙련기술자 중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고장인을 선정·포상하여 숙련기술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 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숙련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숙련기술자, 최고장인에 대하여 정의함
 - ※「기능장려법」에서 「숙련기술장려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용어 및 내용을 반영함

나. 최고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제6조)

- 최고장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안 제3조)
-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산업현장에 종사한 사람으로 숙련기술 의 수준 및 품성 등이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안 제4조)
- 최고장인으로 선정되면 매년 100만원씩 3년간 장려금 지급(안 제6조)

다. 최고장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제11조)

○ 최고장인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안 제7조)

라. 숙련기술자의 우대 및 후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군수는 최고장인이 군의 산업발전과 후진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후원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 제3조, 제11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그 밖에
-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2011.10. 5. ~ 10.24.)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우리 군의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한 숙련기술자 중 장인 정신이 투철하고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최고장인을 선정·포상하여 숙련기술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의 숙련 기술 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신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제2조(목적, 정의)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2) 안 제3조~제6조(최고장인의 선정, 최고장인의 자격요건, 최고장인의 추천, 최고장인에 대한 지원)는 최고장인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 (3) 안 제7조~제11조(최고장인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회의, 수당 등)는 최고장인심사위원회회의 설치·운영방법과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책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됨.

- (4) 안 제12조(숙련기술자 우대 및 후원)는 숙련기술자에 대한 우대 및 후원방법을 명시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으로 판단됨.
- (5)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계법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 2011. 1. 1] [법률 제10338호, 2010. 5.31, 전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 2. "대한민국명장"이란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 3.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①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 차례만 일시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우대할 수 있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제1호에 따른 직종에서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숙련기술을 통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민국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④ 노동부장관은 대한민국명장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체 지원 및 제18조에 따른 사회적인식 제고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의 선정요건에 관한 사항, 선정을 위한 심사절차, 우대내용 및 품위유지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안번호 제2011 - 79호〉

─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11. 16.

○ 발 의 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11. 17.

2.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1. 09. 16.)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건조·보관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50% 이내로 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및 용어 등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개발행위 허가 시 신청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도로와 상·하수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1조제1호)
- 나. 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이나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농산물의 건조·보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을 50%이내로 완화함(안 제53조)
- 다.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집회장의 제한규정을 삭제함 (안 별표 17)
 - 종교 집회장(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종교집회장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등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

라. 그 밖에

-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2) 입법예고(2011.10.17. ~ 2011.11.07.) 결과: 특기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1. 9. 16.)됨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50%로 완화하고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거창군 계획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현행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는 시행령 제39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2) 안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는 국민권익위원 회의 권고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신청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등이 미설치된 경우 신청인이 도로와 상·하수도를 연결하고 도로로 지정·공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 (3) 안 제53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는 시행령 제84조 제7항 및 제8항 개정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으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4) 현행 제74조(과태료의 징수)는 시행령 제134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5) 안 [별표17]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종교집회장에 대한 과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종교집회장의 난립이 우려되나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사항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6)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국토는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 2.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전과 훼손된 자연환경 및 경관의 개선 및 복원
 - 3.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국민생활에 필요한 각종 기초 서비스 제공
 - 4.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5.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의 보전
 - 6. 지역 간 협력 및 균형발전을 통한 공동번영의 추구
 - 7.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 및 지역 내 적절한 기능 배분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전문개정 2009.2.6]
- 제44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 ②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2.29]

-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기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 ② ~ ③ (생략)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9.16] [대통령령 제23148호, 2011, 9.16, 일부개정]

-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가 심의하거나 자 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

항의 심의

-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② 공동구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부시장·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 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 3.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 4.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소속 직원
-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⑤ 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구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9]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9]

-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u>가.</u>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 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 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생략)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

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라 (생략)

4.~ 6 (생략)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따로 정할 수 있다.

-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 나. 공업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 다. 보전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 2. 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 3. 농림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 4.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 ② ~ ③ (생략)
- ④ 삭제 <2011.3.9>
- ⑤ 삭제 <2011.3.9>
- ⑥ 삭제 <2011.3.9>
- ⑦ 삭제 <2011.3.9>
-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14 (생략)
 -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 17 ~ 21 생략
 - ② ~ ⑤ 생략
 -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 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9.7.7, 2011.9.16>
 -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해당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21 생략
- ② ~ ④ 생략
- ⑤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별시· 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5.9.30, 2005.11.11, 2010.10.1>
-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100퍼센트 이하.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 공단지에 한한다): 150퍼센트 이하
- ⑥~⑧ 생략
-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 ②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 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 ③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 2. 당해 시·군·구 및 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 3. (생략)
-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1. 법 제144조제1항의 경우: 1천만원
 - 2. 법 제144조제2항의 경우: 5백만원

[본조신설 2009.7.7]

[**별표 1의2**] <개정 2011.3.9>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1) ~ (3) 생략
나. 도시관리 계획	(1) ~ (2) 생략
다. 도시계획 사업	(1) ~ (2) 생략
라. 주변지역 과의 관계	(1) ~ (3) 생략
마. 기반기설	(1) ~ (3) 생략
바. 그 밖의 사항	(1) ~ (2) 생략.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건토분야 검토분야	허가기준
	이 가 기 판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 작 물 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토지의	
형질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토석채취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허가는 시가화대상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국민경제상 중요한 광물자원의 개발을 위한 경우로서인근의 토지이용에 대한 피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토지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이 아닐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토지
- 2)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토지
- 3) 그 밖에 토지의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
- (다) 토지분할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인 경우 그 개발행위가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되지 아니할 것
-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 (나) 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 (라) <삭제>
 - (마)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 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 (3) 너비 5미터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

마.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당해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당해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건축법」

[시행 2011, 5.30] [법률 제10764호, 2011, 5.30, 타법개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9>
 -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 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10 (생략)
 -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u>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u>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 도로
 -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3. ~ 27 (생략)
 -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⑨ (생략)
-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10.26] [대통령령 제23248호, 2011.10.25, 타법개정]

-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 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 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35조제1항,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

해서는 법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법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법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29>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 토해양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공작물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별표 1] <개정 2011.6.29>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라 (생략)

- 2. (생략)
-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 가.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 미터 미만인 것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 조산원 및 안마원
-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건강보험조합,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아.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자.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

- 4. ~ 9. (생략)
-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하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 11. ~ 22 (생략)
- 23. 교정 및 군사 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교정시설(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를 말한다)
-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 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라. 국방·군사시설
-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 나. 전신전화국
- 다. 촬영소
- 라. 통신용 시설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5. 발전시설

발전소(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6. 묘지 관련 시설
- 가. 화장시설
-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27. (생략)
-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농지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2011. 4.12, 타법개정]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 3. 농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③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건축물의 건축
-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3. 토지의 형질변경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농지법 시행령」

[시행 2011. 1. 1]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20, 타법개정]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④ (생략)

- ⑤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시설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 등이 있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2.29>
-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2. 야생조수(野生鳥獸)의 인공사육시설
-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⑥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 (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풍력발전설비, 송 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및 하천부속물
-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 ⑦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
-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예냉(豫冷)·저장·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

- 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 2. "지식산업"이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 분야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 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 5. "재활용산업"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말한다.
- 6.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7.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류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 8. "산업단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및 이들 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다.
 - <u>가. 국가산업단지</u>: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제6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u>나. 일반산업단지</u>: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 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u>라. 농공단지(農工團地</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14, 일부개정]

제124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 무부닦행위를 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 2009. 9.10] [법률 제9780호, 2009. 6. 9, 일부개정]

-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2. 도로·철도·교량·운하·터널·수로·매설물 등과 그 부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
 - 3. 하천 또는 해면의 매립·준설(浚渫)과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 4. 광물·토석(土石) 또는 토사(土砂)의 채취
 - 5. 해안의 굴착
 - 6.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 7.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 8. 해저시설물의 부설 또는 변경
 - 9. 통신시설의 설치와 그 사용
 - 10. 총포의 발사 또는 폭발물의 폭발
 - 11. 해운의 영위
 - 12. 어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 13. 부표(浮標)·입표(立標), 그 밖의 표지의 설치 또는 변경
 -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때에 도 제1항을 적용한다.
 -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제10조제1항제2호·제4호 및 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등화의 설치·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 치
 - ③ ~ ⑨ 생략
 - ⑧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협의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가등을 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허가등의 취소, 행위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11. 9.16] [법률 제11059호, 2011. 9.16, 일부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24, 2009.2.6>

- 1. <u>"정비구역"</u>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된 구역을 말하다.
-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3. "노후·불량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 나.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 축물
 - (1)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 다.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5.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6. "대지"라 함은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 7. ~11 생략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 35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자원부 고시제2007-5호, 2007. 1. 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2월 25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등)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송 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시설하는 기계·기구·대·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그 밖의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전선과 다른 전선 및 시설물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전선로의 전선 또는 전차선 등은 다른 전선,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다른 시설물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설물 또는 식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없고 접촉, 단선 등에 의해 생기는 감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 2012, 1,29] [법률 제10978호, 2011, 7.28, 일부개정]

제18조(용도지구)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행위기준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5>
 - 1. ~ 2 생략
 - 3. 공원마을지구
 - 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 다.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라. 공원마을지구의 자체 기능상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마.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家內工業)
 - 4. 삭제 <2011.4.5>
 - 5. 삭제 <2011.4.5>
 - 6. 생략
 - ③ 삭제 <2011.4.5>
 - ④ ~ ⑤ 생략

__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__ __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11. 16.
- 발 의 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11. 17.

2.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대한 빗물 설치가 의무화 되고,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빗물이용을 활성화 시켜 향후 예상되는 물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물의 재이용"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규정을 정함(안 제3조)
 -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시설의 설치관리에 노력
 - 공공건축물을 건축할 때나 대단위 개발계획 수립 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장
- 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수립(안 제4조)
 -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장사항 규정안 계획서를 제출받아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설치확인서 발급규정을 정함(안 제5조)
- 마.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함(안 제6조)
- 바. 중수도의 설치·관리 규정을 정함(안 제8조)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 규정
- 사. 빗물 이용 시 수도요금을 최고 60%범위 내에서 감면하고, 중수도의 감면 규정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규정토록 함(안 제11조)
- 아. 물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물재이용 관리위원 회"설치 규정을 정함(안 제10조)
- 자. 물의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토록 함(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함

다. 협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상하수도사업소

라. 그 밖에

(1)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2) 입법예고: 해당없음

(3) 규제심사: 해당없음

(4) 업무협의: 5명(군의원,전문위원,관련부서)

○ 일 시: 2011. 11. 7(월) 10:00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종합 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에 대한 빗물 재이용 시설설치가 의무화 되고, 물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을 새로운 수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빗물이용을 활성화시켜 향후 예상되는 물 부족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을 신규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됨
- 이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1) 안 제1조~제2조(목적, 정의)는 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한 사항으로 필요조항이며
- (2) 안 제3조(군수의 책무)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 (3) 안 제4조~제5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 대상)는 물 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방법과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및 권고 대상 시설물을 규정한 사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검토됨

- (4) 안 제6조~제7조(설치신고 및 확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는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방법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타당하며
- (5) 안 제8조(중수도의 설치·관리)는 중수도 설치 권장의 범위 등을 규정한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 (6) 안 제9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시설의 규모와 공급량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 부합되며
- (7) 안 제10조~제11조(재정지원 등,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내용과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감면방법을 나열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8) 안 제12조~제13조(빗물사용수량 인정 배제, 감면 수도요금의 환수)는 사용량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 및 감면 수도요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부합함
- (9) 안 제14조~제1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과 여비, 운영세칙)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구성방법,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방법, 운영 세칙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10) 안 제20조 ~제21조(시범사업 발굴, 교육·홍보)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교육·홍보사항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11) 이 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법령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관계 법령

거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안 관련 법령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1.7, 2010.6.8>

-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 2.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 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3.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 4.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 5.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6. "하수관거"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하거나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으로 유출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 7. "합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함께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 8. "분류식하수관거"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거를 말한다.
- 9.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를 처리하여 하천·바다 그 밖의 공유수면에 방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9의2. 삭제<2010.6.8>
- 10.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11. 삭제<2010.6.8>
- 12.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 1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14. "배수구역"이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하수를 유출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 15. "하수처리구역"이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서 제15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구역을 말한다.

제5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공중위생 및 생활환경의 개선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수질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관할 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 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 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이를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4.5, 2011.4.14>

- ②하수도가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당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 ③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7, 2010.6.8>
- 1.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2. 하수도에 따라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는 구역에 관한 사항
- 3. 하수도의 기본적 시설의 배치·구조 및 능력에 관한 사항
- 4. 합류식하수관거와 분류식하수관거의 배치에 관한 사항
- 5. 하수도정비사업의 실시순위에 관한 사항
- 6. 삭제<2010.6.8>
- 7.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찌꺼기의 처리계획 및 처리시설
- 의 설치에 관한 사항
- 8. 분뇨의 처리계획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9. 하수와 분뇨의 연계처리에 관한 사항
- 10. 하수도 관련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하수도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6조 삭제<2010.6.8> ⇒ 종전 제26조(중수도의 설치) 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중축·개축 또는 재축되는 부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재이용수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인 시설물
- ②중수도의 시설기준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용수량의 기준, 동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 연면적,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국가는 중수도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 ④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2009.2.6>

-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이하 "종말처리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수도법]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5.25>

- 1. 국토해양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 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 계획의 수립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수도정비기본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일반수도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공업용수도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각각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2.29, 2010.5.25>
-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한다.<개정 2008.2.29, 2010.5.25, 2011.4.14>

- ⑤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지체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5.25> ⑥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0.5.25>
- ⑦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0.5.25, 2010.6.8>
-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교체에 관한 사항
- 9. 삭제<2010.6.8>
- 10.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사항
- 11.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 ⑧ 환경부장관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공업용수도가 포함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면 그 공업용수도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8.2.29>
- ⑨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지나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0.5.25>
- 제16조(물 사용기기의 물 사용량 표시 등) 물 사용기기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 포함하여 물 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7.1.3>
-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지정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1.3>

-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1.3>
- ⑤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승인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개정 2011.4.14>)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4.14>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1.4.14>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전문개정 2009.2.6]

[거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6.9, 2011.9.16> 1. "대지(垈地)"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중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 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③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⑧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및 공공청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하다

- ②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③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설치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 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 3.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4.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개발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③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및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물 사용량의 산정기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 연면적 및 폐수배출량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④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⑤ 중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제18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 등록을 한 자(이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라 한다)에게 설계·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공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⑥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수도의 안전성 및 수질 등을 분기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 ⑧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중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사용된 물을 생활용수 · 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수도·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것
-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 ─ 검 토 보 고 서 ─ ─

1. 검토경과

○ 제출일자: 2011. 11. 16.

○ 발 의 자: 거창군수

○ 회부일자: 2011. 11. 17.

2. 제안이유

○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천적 교육 및 지역의 과학문화 확충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성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시 설 명: 거창천적생태과학관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사과테마파크 내
- 다. 규 모: 연면적 1,040㎡ (지하1층, 지상3층)
- 천적전시시설 336㎡, 연구 및 사육시설 267㎡, 교육관 81㎡, 기타 356 ㎡ 라. 주요시설
 - 교육장(1층): 친환경영농 천적활용 교육
 - 전시실(1층): 천적의 이해, 천적의 종류, 천적의 관찰
 - 전시실(2층): 천적의 활용, 한국의 천적곤충, 천적의 체험
- 천적사육 및 연구실(3층): 체험 및 교육용 천적곤충 연구 및 사육 마. 위탁대상 업무
 - 시설운영: 생태관내의 관련 시설물의 운영 및 콘텐츠 유지관리
 - 전시운영: 천적 콘텐츠 전시물의 기획 및 전시, 유지보수
- 곤충 종 사육 및 유지: 전시용, 교육용 살아있는 곤충의 상시유지 바. 위탁기간: 5년 이내 (최초 2년)
- 사. 위탁운영 방식
 - 시설관리, 전시운영, 천적교육 일체 위탁

- 천적과학과 운영수입 일체는 거창군 수입처리
- 향후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추이 등을 감안 인력 조정 운영 아. 소요예산
 - 연간 150,000천원(군비) 이내 편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 「과학관육성법」 제17조
- 「과학관육성법 시행령」제4조 및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제2조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3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2조(위탁운영)
- 나. 예산조치: 2011년도 예산 편성 및 2012년 예산 요구

5. 검토의견

- 금번 제출된 거창천적생태과학관 위탁운영 동의안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1항에서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 「거창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 본 건은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이므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천적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관계 법 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 2010. 2. 4] [법률 제9992호, 2010. 2. 4,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정책과), 02-2100-6608~10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①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인은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이 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혁신함으로써 과학기술 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정책형성 및 정책집행의 과학화와 전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과학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2.4]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 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 3. 기금운용수익금
-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예수김)
-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대학 및 연구 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④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

□ 「과학관육성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6호, 2008. 3.21, 타법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문화과). 02-2100-6630~34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과학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12.30>

- 1. "과학관"이라 함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 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 자료·전문직원등 등록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2. "과학기술자료"라 함은 기초과학·응용과학·산업기술·과학기술사 및 자연사에 관한 자료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로서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이라 함은 과학기술지식의 보급을 위한 각종 경연, 실험·실습, 강좌·강 연회, 영사회 및 체험·탐구·연구프로그램등을 말한다.

제3조(과학관의 구분) <u>과학관은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u><개정 1996.12.30>

- 1. 국립과학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 2. 공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 3. 사립과학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과학관
- 4. 삭제<1996.12.30>

제4조(적용범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는 과학관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항,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8.12.28>

제4조의2(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과학관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활성화

-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과학관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과학관의 설립촉진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부문별 육성지원시책과제 및 장·중·단기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3.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 4. 국내외 과학관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 5. 기타 과학관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5조(사업) 과학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 3.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
- 4.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배포
- 5. 국내외의 다른 과학관과의 과학기술자료·간행물 또는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등의 협력
- 6. 기타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등록) ①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②제1항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설립목적
- 2. 명칭
- 3. 소재지
- 4.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5. 시설명세서
- 6. 과학기술자료의 목록
- 7.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과학관등록증(이 한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제2항 각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8.2.29>

제6조의2(협의) ①국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과학기 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8.2.29>

②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6.12.30]

제7조(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등) ①시·도지사는 사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설립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승인할 수있다. 승인을 얻은 설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 각호중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2.12.26>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2002.12.26>
- ④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의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8.3, 1996.12.30, 2002.12.26, 2002.12.30, 2006.9.27, 2007.4.11, 2008.3.21>

-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설립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 3. 「수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 4. 「하수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5.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 6.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7. 삭제 <2002.12.26>

제9조 삭제<1998.12.28>

제10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과학관은 관람료 기타 과학기술자료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의 금액의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되 공립과학관의 관람료등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8.2.29>

제11조 삭제<1998.12.28>

제12조(등록의 취소) ①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28, 2002.12.26>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 2.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3.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 4. 삭제 <1998.12.28>
- 5. 삭제 <1998.12.28>
- 6.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② 삭제 <1998.12.28>
- ③ 삭제 <1998.12.28>

제13조(청문)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2002.12.26>

-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14조(폐관통보 <개정 1998.12.28>) ①등록과학관을 폐관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과학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2002.12.26>

제15조 삭제<1998.12.28>

제16조(지도·조언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과학관에 대하여 그 설립·운영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지도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2008.2.29>

②삭제<1998.12.28>

제17조(경비의 보조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설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등록과학관에 대하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각각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②정부는 국영수송기관에 의한 과학기술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 기타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③모든 수송기관은 과학기술자료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수익사업) ①등록과학관은 과학관사업과 관련된 인쇄물·시청각자료·기념품등의 제작·판매 및 편익시설의 운영등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할수 있다.

- ②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과학관의 목적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③수익사업의 범위 기타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8.12.28, 2008.2.29>

제19조(후원회) ①등록과학관은 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당해 과학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 ③후원회가 후원금을 받거나 물품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당해 과학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8.2.29>
- ④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과학기술자료의 교환·양여등) ①과학관은 상호간에 과학기술자료를 교환·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과학기술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과학관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과학관협력망의 구성) ①정부는 과학기술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등의 효율화와 각종 과학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과학관협력망을 구성할 수 있다.

-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 2. 과학기술자료의 정리·정보처리 및 그 시설등의 표준화
- 3. 종합목록·상호대차등 과학관 운영의 효율화
- 4. 기타 과학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 ②과학관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과학관협회) ①과학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과학관 운영에 관한 정보자료의 교환, 과학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외국의 과학관과의 교류 기타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과학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조례의 제정)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과학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26]

제24조(통보) 시·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2.12.26]

□ 「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시행 2008. 2.29]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타 과학기술자료)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과학기술자료는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등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시키고자 하는 자료로 한다.

제3조(과학기술자료의 분류)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자료는 별표1과 같이 분

류한다.

제3조의2(과학관육성기본계획의 수립절차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4.9, 2008.2.29>
-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본조신설 1997·5·9]

제4조(과학관의 기타 사업) 법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9>

- 1. 야외관찰학습지도
- 2. 전시기법의 연구·개발
- 3. 특별전시회의 개최
- 4. 표본제작의 실습지도
- 5. 산업현장실습지도
- 6. 과학공작 및 모형의 조립지도
- 7. 과학경연대회의 개최
- 8. 체험·탐구·연구프로그램 등의 개설·운영

제5조(등록요건)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전문직원의 자격)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전문직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5·9, 1999.4.9>

- 1.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당해 과학기술자료의 관련직렬의 연구직 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자
- 2.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당해 과학기술자료의 관련직렬의 연구직공무원 또는 연구직공무원이었던 자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당해 과학관이 취급하는 과학기술자료 관련학과(이하 "당해 과학관관련학과"라 한다)를 전공으로 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연구기관·과학관 또는 박물관 등에서 과학기술자료에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 경력(이하 "과학관등근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이상인 자
-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당해 과학관관련학과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 7.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과학관등 근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 8.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자로서 과학관등근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제7조(등록절차등)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관등록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5.9, 1999.4.9, 2003.6.23, 2008.2.29>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과학관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 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학관의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5·9, 1999.4.9, 2003.6.23, 2008.2.29>

- ③법 제6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9>
- 1. 전문직원의 자격구비에 관한 사항
- 2.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이용료의 수입계획

제7조의2(협의) ①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과학관의 설립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8.2.29>

- 1. 사업계획서
- 2.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 3. 과학기술자료내역서
- 4.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서류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시설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3.6.23, 2008.2.29>
- 1. 과학기술자료의 전시를 위한 옥내·외 전시시설
- 2. 야외관찰학습을 위한 시설
- 3. 그밖에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육과학기 술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세부 종류 및 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3.6.23, 2008.2.29>
-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립과학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의과정에서 해당 국립과학관 설립·운영의 목적 및 예산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그 시설의 종류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3.6.23, 2008.2.29> [본조신설 1997·5·9]

제8조(사립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신청 등) 법 제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과학관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사립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사립과학관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3.6.23]

제9조(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변경중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변경은 이미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사업시행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전시실을 제외한 기타 시설의 위치변경 및 10분의 1이하에 해당되는 면적의 변경
- 2. 6월의 범위내에서의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제10조(설립계획승인등의 협의) ①시·도지사가 법 제7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요청서에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4.9, 2003.6.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1999.4.9>

제12조 삭제<1999.4.9>

제13조 삭제<1997·12·31>

제14조 삭제<1999.4.9>

제14조의2 (과학관의 등록등의 공고)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7일이내에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4.9, 2003.6.23>

- 1. 법 제6조제1항·제4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변경등록 및 그 취소
- 2. 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 및 그 취소
-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등록의 말소 [본조신설 1997·5·9]

제14조의3 삭제<1999.4.9>

제15조(후원회의 구성·운영)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후원회는 과학관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 ②후원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해당 등록과학관에 금품 또는 학술자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원은 과학관의 사업중 특정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등록과학관장은 후원회원에게 과학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④등록과학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로부터 금품 또는 학술자료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내용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과학관협력망의 조직·운영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으로 구분하되, 중앙관은 국립중앙과학관이, 지역대표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과학관이 된다.<개정 1997.5.9, 2003.6.23>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4.9, 2008.2.29>

제17조 삭제<1999.4.9>

□ 「과학관육성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 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제2조(등록신청서류등) ①「과학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등록신청서 및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개정 1997.5.30, 2005.11.17> ②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의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4.26, 1997.5.30>

- 1. 과학관의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 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명세서 1부
- 3. 별지 제3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목록 1부
- 4. 별지 제4호서식의 과학기술자료내역서 1부
- 5. 별지 제5호서식의 전문직원명단 1부 및 전문직원의 이력서 각 1부(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중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를 첨부하여야 한다)
- 6. 삭제<1999.12.3>
- 7. 연간예산수지계획서 1부
- 8. 삭제<1999.12.3>
- 9. 별지 제11호서식의 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 1부

제3조(변경등록)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과학관(이하 "등록과학관"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2006.7.14>

[전문개정 1999.12.3]

제4조 (과학관등록증의 서식등)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 식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등록과학관이 변경등록을 한 때 또는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되는 등의 사유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7, 2003.7.1>

제5조(과학관설립계획승인신청서등) ①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 청서 및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개정 1997.5.30>

②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5.30, 2005.11.17, 2006.7.14>

- 1. 사업계획서 1부
- 2. 토지의 조서(위치,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 3. 건물의 조서(위치, 지번, 건물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1부

- 4.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 1부
- 5. 삭제 <2006.7.14>
-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7. 삭제 <2006.7.14>
- 8. 위치도 1부
- 9. 개략설계도서 1부
- 10. 과학기술자료목록 및 과학기술자료내역서 각 1부
- ③영 제8조에 따른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설립계획 승인사항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로 한다. <개정 1997.5.30, 2006.7.14>
- ④영 제8조에 따라 사립과학관의 설립계획승인신청서 또는 설립계획변경승인신청서(변경하고자하는 사항에 사립과학관 설립예정 위치 및 부지 등 부동산 관련 사항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 2. 토지대장 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1부

제6조 삭제<1999.4.17>

제7조(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개정 1995.4.26>)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 관 및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5.4.26, 1997.5.30>

제8조(폐관통보) 등록과학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의 통보를 하는 때에는 폐관사유·폐관연월일 등을 기재한 서면을 폐관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1>

[전문개정 1999.4.17<u>]</u>

제9조 삭제<1999.4.17>

제10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과학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5.30>

- 1. 간행물의 제작 · 판매
- 2. 전시품·기념품의 제작·판매
- 3. 실험기자재의 제작 · 판매
- 4. 시청각용 비디오테이프 및 필름의 제작 · 판매
- 5. 관람자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 · 운영
- 6. 전기 · 전자 · 기계등 과학의 원리를 응용한 놀이시설의 설치 · 운영
- 7. 수영장시설의 설치 · 운영
- 8. 매점등 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학관의 수익사업을 위한 시설은 과학관부지안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1999.4.17>

[별표] <개정 2008.12.31>

국·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의 기준(제7조 관련)

1. 관람료

	급액			
구분	개인	단체 (30명 이상)	비고	
어른	4천원	3천원	20세 ~64세	
청소년	2천원	1천5백원	13세 ~19세	
어린이	2천원	1천5백원	7세 ~12세	
노인	2천원	1천5백원	65세 이상	
장애인	2천원	1천5백원		
국가유공자	2천원	1천5백원		

2. 자료이용료

구분	수량	금액
사진 및 비디오 촬영	1회	2만원
사진원판이용	1 매	2천원

비고: 국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국립과학관 장이 정하고, <u>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자료이용료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범위</u>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19호, 2010. 2. 4, 제정] 농림수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500-1650

제1조(목적) 이 법은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며 곤충생태에 대한 이 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곤충산업의 현황과 전망
 - 2. 곤충산업의 지원방향 및 목표
 - 3.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
 - 5.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
 - 6.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및 이해증진 방안
 - 7. 지방자치단체의 곤충 관련 사업 지원방안
 - 8. 그 밖에 곤충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다.
- ④ 농촌진흥청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농촌진흥법」 제4조의2에 따른 농촌 지도사업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연구기관 및 단

- 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 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진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곤충의 위해성 평가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의 대량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상 곤충의 위해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위해성 평가결과 곤충의 사육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의 생명 · 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을 제한하거나 폐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곤충의 사육기준 및 규격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천적곤충, 화분매개곤충, 환경정화곤충, 식·약용곤충 및 학습·애완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있는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 등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하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야생곤충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과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곤충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신고 등) ① 곤충을 사육, 생산, 가공 또는 유통하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곤충의 무단방출 및 탈출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와 생태환경에 대한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있다.

-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 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
- 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
- 4.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 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곤충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나 폐기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곤충을 유통 또는 판매한 자
-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이 부과·징수한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8. 5] [대통령령 제22325호, 2010. 8. 4,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산업)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곤충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곤충의 사육업
- 2.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생산업ㆍ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
- 3.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 · 판매업
-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 · 판매업
-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 · 박람회장 · 생태원 · 체험학습장 등 조성업 · 운영업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곤충 산업 육성에 필요한 곤충의 종류 및 특성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곤충농가, 곤충의 생산업체 · 가공업체 · 유통업체 · 판매업체의 현황
- 2. 곤충을 이용한 표본 제작업체 · 판매업체의 현황
- 3. 곤충의 먹이, 사육상자 등 곤충 관련 용품 생산업체 · 판매업체의 현황
- 4. 곤충을 이용한 전시장·박람회장·생태원·체험학습장 등의 현황
- 5. 곤충 관련 연구소 현황
- 6. 그 밖에 곤충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정기조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하고 수시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강사료와 수당
 - 2. 교육교재 제작비와 실습기자재 구입비
 -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 ⑤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장수풍뎅이
-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제7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는 제외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 2. 법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산림과 관련된 분야만 해당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8. 5]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36호, 2010. 8. 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곤충의 범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 1. 국제동물명명규약(ICZN: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에 따른 분류학상 절지동물문(節肢動物門) 곤충강(昆蟲綱)에 속하는 동물
- 2.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 3.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4조(위해성 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 평가(이 하 "위해성 평가"라 한다)의 대상 곤충은 다음 각 호의 곤충으로 한다.

- 1. 사람이나 가축에 위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피해를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곤충
- 3. 생태환경을 교란·파괴하는 것이 확인되었거나 교란·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곤충
-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곤충
- ②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 1. 사람이나 가축에 대한 위해의 정도와 그 범위
- 2. 농작물이나 산림자원에 대한 피해의 정도와 그 범위
- 3. 생태환경을 교란하거나 파괴하는 정도와 그 범위
- ③ 위해성 평가는 현지실사, 문헌조사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필요에 따라 병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④ 위해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다.
- 1.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이 제1항에 따른 대상 곤충을 인지하는 경우
- 2. 곤충을 사육・유통하려는 자나 사육・유통하고 있는 자가 의뢰하는 경우
-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의뢰서를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산림청장은 제5항에 따라 의뢰서를 받으면 위해성을 평가하여 별지 제5 호서식의 위해성 평가 결과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곤충의 종류 및 사육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사육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규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장수풍뎅이
- 가. 1등급: 성충 68mm 이상, 유충 30g 이상
- 나. 2등급: 성충 50mm 이상부터 68mm 미만까지, 유충 25g 이상부터 30g 미만까지
- 다. 3등급: 성충 50mm 미만, 유충 25g 미만
- 2. 장수풍뎅이 외의 곤충: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

제6조(곤충의 사육 등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업·생산업·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곤충의 사육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7조(예방조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예방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곤충의 탈출방지용 이중 출입구 장치의 설치
-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에 일반인에게 알리는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 표지의 설치
- 3.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곤충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 치

[별표 1] <u>천적곤충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곤충의 종류(제5</u>조제1항 관련)

구분	종류
천적곤충	긴털이리응애, 꼬마무당벌레, 사막이리응애, 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어비진디벌, 진디면충좀벌, 칠성풀잠자리붙이, 담배장님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가는뿔다리좀응애, 굴파리좀벌, 쌀좀알벌, 갈색반날개, 배노랑금좀벌, 칠레이리응애, 콜레마니진디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미끌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참딱부리노린재, 예쁜가는배고치벌, 오리꽃등에, 꼬마남생이무당벌레, 팔라시스이리응애, 응애잡이혹파리, 민깨알반날개, 싸리진디벌, 어리줄풀잠자리, 나팔이리응애, 명충알벌, 프루텔고치벌, 알깡충좀벌, 검정알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화분매개곤충	뒤영벌류, 꿀벌류, 뿔가위벌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곤충
환경정화곤충	동애등에류, 소똥구리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식용•약용곤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학습 • 애완곤충	노린재류, 풍뎅이류, 개미류, 여치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수서곤충류, 귀뚜라미류, 꽃무지류, 메뚜기류, 물방개류, 매미류, 그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사료용 곤충	거저리류, 귀뚜라미류, 동애등에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그 밖의 동물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 물

거창군 조례 제2037호

□ 거창천적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적생태에 대한 체험 및 학습의 기회와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설립한 거창 천적생태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거창천적생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소재지는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19-1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 1. 천적생태체험을 통한 자연생태계 보호의식 고취
- 2. 천적에 관한 자료의 발굴·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 3. 천적에 관한 전문적 · 학술적인 조사 · 연구
- 4. 천적을 이용한 체험·탐구·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운영
- 5.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여 그 전시물 및 시설물을 일반인에게 관람 및 이용하게 한다.

- 1. 매주 월요일
- 2. 매년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 3. 그 밖에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관람시간)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그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관람권) ① 과학관을 관람하려는 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관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관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 ③ 관람료를 납부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권을 발급한다.
-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면제)

-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3.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 4.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 와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또 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8. 표본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 9. 과학관에서 추진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여하는 자
- 10. 그 밖에 군수가 과학관의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일반관람자에게도 무료관람 또는 특별할인관람을 하게 할수 있다.

제8조(입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학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음주 상태로 공중이나 전시물 및 시설물에 유해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
-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3. 그 밖에 전시물 및 시설물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1. 흡연·음주·취사 또는 쓰레기투기 행위
- 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 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 4.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 5.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
- 6.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자의 책임) 관람자가 고의나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과학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 및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과학관의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관부지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1. 매점 등 편익시설
- 2. 전시품·기념품 판매점
- 3.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 판매점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과학관의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과학관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⑤ 군수는 과학관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① 관람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준용하고, 과학관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7.6,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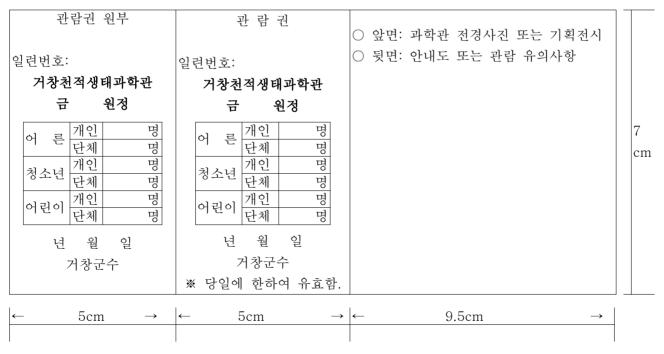
[별표]

과학관의 관람료 기준(제6조제1항 관련)

	금액			
구분	개인	단체 (20명 이상)	비고	
어른	2천원	1천원	20세 ~64세	
청소년	1천원	5백원	13세 ~19세	
어린이	5백원	3백원	7세 ~12세	

[별지 제1호서식]

관 람 권



[별지 제2호서식]

관람료 일일 징수실적

갤	담당자	주 사	과 장
결 재			

년 월 일

				<u>'</u>	
	구 분	관람권 판매번호	매 수	징수액	비고
	계				
개인	소 계				
	어 른				
	청소년				
단체	어린이				
	소 계				
	어 른				
	청소년				
무료	어린이				
	소 계				
	어린이 (6세 이하)				
	노인 (65세 이상)				
	장애인				
	그 밖에 (공무 등)				